

퇴직신탁 표준계약서(구 하나은행)

_____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하나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신탁관리인 등에게 주지시키고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수탁자는 신규계약시 계약체결 사실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위탁자) 이 신탁의 위탁자는 이 계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자로 합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제출한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로 하되, 가입자 명부에는 위탁자의 퇴직금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수익자는 퇴직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급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위탁자는 제2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가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위탁자는 퇴직이외의 사유로 수익자를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5조(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하며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수익자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수익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노동조합이 없거나 수익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노사협의회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대표. 단,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③ 위탁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6조(신탁부금) ① 위탁자는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에 금 _____ 원을 최초 신탁부금으로 신탁합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부금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중에 목표적립부금(목표적립기간 내에 목표적립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할 신탁부금)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신탁부금은 퇴직신탁 계약부속협정서(이하 '계약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수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납입안내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의 목표적립비율은 위탁자가 신탁관리인과 협의하여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 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신탁기간) 이 신탁의 기간은 신탁계약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8조(이익계산) ① 이 신탁의 이익계산은 위탁자의 매 회계연도 결산일(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영업일), 퇴직급부금 지급시 및 신탁 해지일 또는 종료일에 실시하며, 위탁자의 회계연도 결산일(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영업일)에 이익계산시에는 신탁이익을 신탁금에 가감합니다.

② 제1항의 이익계산은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을 합니다.

제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탁재산"이라 함)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신탁순자산총액"이라 함)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② 이 신탁의 수익권좌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탁금액/수탁일의 기준가격×1,000

③ 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자산의 평가는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신탁의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⑤ 수탁자는 기준가격을 매일계산하여 영업점에 비치하고 신탁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신탁재산의 평가) ①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1. 주식

가.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일의 최종시가. 다만, 둘 이상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량이 많은 증권거래소의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며, 평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 최종시가

나.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며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

다. 권리락, 배당락, 자본감소, 합병 등의 사유로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가 형성될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라. "가" 내지 "다"의 기준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주식일 경우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2. 채권(개발신탁수익증권 포함)

가. 상장채권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월간 매월 10일 이상 거래소에서 시세(기세 포함)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일의 최종시가

나. "가"에 해당되는 상장채권중 평가일에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채권과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장채권은 "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다. 비상장채권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2조1항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 "가" 내지 "다"의 기준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채권일 경우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수익증권(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포함)은 당해 수익증권을 발행한 위탁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

4.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

가. 기업어음(CP)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

나. 양도성정기예금정서(CD), 표지어음

발행주체에 따라 동일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금융채 기준수익률

다. "가" 내지 "나" 기준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공정가액

5. 파생상품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가. 선물거래는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정산가격. 단 평가일 현재 선물정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선물정산가격.

나. 옵션은 당해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 단, 평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자의 기준가격

다. 해외선물거래의 평가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

6.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1호 및 2호의 방법을 준용하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④ 이 신탁에 편입된 운용자산중 부실자산(발행자의 최종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정관리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자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한 자산, 신용등급이 D등급인 채권등)에 대하여는 부실인식시점에서 미수수익을 "0"원으로 계상합니다.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 신탁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것인지, 신탁의 목적을 같이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합동하여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부속 협정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4항의 주식안정형과 채권형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부속협정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운용방법(단독운용과 합동운용, 주식안정형과 채권형)의 변경은 재계산시에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계약부속 협정서에 정합니다. 다만, 제24조에서 정한사유 및 신탁재산처분 손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주식안정형)

1.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 이하로 합니다.

2. 대출,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90%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이하로 하며,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이하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비율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또는 파생상품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목적의 파생상품거래는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및 해지, 계약이전, 중간정산, 제3항의 운용방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크게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채권형)

1.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이하로 합니다.

2. 대출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이하로 합니다.

3. 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비율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하고 있는 채권 또는 파생상품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목적의 파생상품거래는 제1호의 운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및 해지, 계약이전, 중간정산, 제3항의 운용방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크게 감소하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운용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 주식안정형 제1호의 "주식(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발행주식·공모주식 포함)에의 운용"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⑥ 제5항의 "공모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계기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중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의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주청약 또는 실권주 및 잔여주식 인수
2. 공모주

⑦ 제4항 주식안정형 제2호 및 채권형 제2호의 "대출에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로 합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대출
2. 은행법 제2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4.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출

⑧ 은행은 제7항의 대출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신용분석을 통하여 신용등급 책정 및 적절한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며, 대출금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범위내에서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4항 주식안정형 제2호 및 채권형 제1호의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를 포함합니다)에의 운용"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응모·인수·매입을 말합니다.

1. 국채·공채

2. 은행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기관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채권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표시채권

8.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규정하는 외화증권

⑩ 제9항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모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합니다.

1. 보증부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채권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2. 제9항 제3호의 사채권중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하여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⑪ 제9항 내지 제10항의 "사모사채" 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것
2.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1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

⑫ 제4항 주식안정형 제2호 및 채권형 제1호의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당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3. 제10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4. 증권거래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로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의 매매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를 관리하는 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
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7.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9.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한 법인이 발행하는 어음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12. 관계법령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은 방법

⑬ 제4항 (주식안정형)의 제1호, 제2호 및 (채권형)의 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이란 각호로 합니다. 다만, 제3호의 선물거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
3. 선물거래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선물거래

제12조(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위탁자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신탁재산운용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신탁재산운용의 제한) ① 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2. 동일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3. 동일한 법인(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1조제7항, 제9항 및 제12항 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11조 제7항 제5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4. 동일한 계열기업군(은행감독규정 제79조에 정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1조 제7항, 제9항 및 제12항 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11조 제7항 제5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25% 이내
 5.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1조 제7항, 제9항 및 제12항 제3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11조 제7항 제5호에 정한 보증서 담보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7.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다.
- ② 이 신탁의 신탁금액이 500억원미만일 때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판매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동일한 법인 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억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잔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다만, 단독운용하는 신탁의 신탁보수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기재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채권형 : 연(0.3)%
 2. 주식안정형 : 연(0.3)%
- ②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보수 계산기간중 매일 미지급신탁보수로 계상하고 수탁자의 매회계년도 결산일 및 신탁단위(펀드)의 청산일에 취득합니다.
- ③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단독운용의 경우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계약부속협정서에 정하고, 합동운용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내규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신탁재산의 표시) 이 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조세 및 비용)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중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은행계정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17조(원본보전) 신탁의 해지 또는 종료시에 신탁기간중 발생한 신탁이익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합계액을 영(零)으로 하여 보전합니다.

제18조(퇴직급부금의 지급) ① 위탁자는 퇴직금 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직급부금 지급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퇴직급부금은 수익자의 기시 퇴직금추계액(가입시 또는 재계산시 위탁자가 제출한 최근의 수익자별 퇴직금추계액)에 적립비율(적립비율 산정시점의 기시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 대비 신탁금 잔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급부금은 수익자의 기시 퇴직금추계액과 중간정산금액중 작은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수익자 전원이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중간정산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퇴직급부금 지급 통보 및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수익자에게 퇴직급부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의 퇴직급부금은 퇴직급부금지급지시서 접수일로 부터 채권형은 3영업일에, 주식안정형은 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기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영업일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중도해지) ①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2.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수탁자의 사임
 5. 제21조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의 이전을 위한 경우
 6.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위한 경우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일반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신탁재산중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이때 중도해지수수료는 신탁기간중 발생한 신탁이익 범위내에서 다음표와 같이 차감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단,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기간	중도해지수수료
1년 미만	해지역의 (3) %
2년 미만	해지역의 (2) %
3년 미만	해지역의 (1) %

제20조(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보하고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② 수탁자사임의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사임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신탁계약의 이전) ①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계약이전 수수료를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1년이상 경과한 신탁계약에 대하여는 이전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② 신탁계약이전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재산을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계약이전 받는 수탁기관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신탁계약 이전의 경우 수탁자는 이전할 신탁금을 제18조 제5항의 지급기간을 준용하여 이전받는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제22조(수익자의 동의) ① 제19조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수익자의 동의는 수익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수익자중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수익자의 노동조합가입 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만 노사협의회 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수익자의 동의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 대표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수익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동의의 확인은 위탁자가 합니다.

제23조(최종계산 및 신탁금의 교부) ① 이 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해지신탁금을 수익자별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그 추계액에 적립비율(해지시점의 퇴직금추계액 합계액 대비 해지신탁금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위탁자의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점의 전체가입자의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인과 협의하여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추계액을 사용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이 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한 때에 수익자가 신탁금과 신탁이익을 이의없이 수령한 때에는 그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③ 해지신탁금은 제18조 제5항의 지급기간을 준용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지신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신탁금 지급의 연기) 제18조 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2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 신탁관리인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퇴직소득세등의 원천징수 의무) 위탁자는 퇴직금부금 및 해지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무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단, 위탁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퇴직금부금 및 신탁금 지급시 공제) 수탁자는 제18조 및 제23조의 퇴직금부금 또는 신탁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전환분 및 위탁자가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세등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제27조(재계산) ① 수탁자는 매년 계약부속협정서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재계산을 실시하기로 하며,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변경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로 재계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가 재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한 기일안에 수탁자에게 제출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재계산을 하는 시점에서 신탁금이 목표적립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금 추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퇴직금추계액 합계액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신탁금이 퇴직금 추계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수탁자는 재계산을 실시한 후 위탁자의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가입자별 수급예상액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며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는 재계산보고서 및 신탁부금 납입안내서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8조(신탁재산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서 정하는 최종계산의 결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 및 제27조 제3항의 초과금액 발생의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공제금 및 초과하는 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29조(추가가입) ①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 새로이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위탁자의 오류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의 추가가입시 에 위탁자는 수탁자에 통지하고 수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추가 가입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가가입은 추가가입자의 퇴직금추계액에 직전 재계산시점의 적립비율 을 곱한 금액이상에 해당하는 신탁부금이 추가로 납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30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수익자가 퇴직시 위탁자는 대출금과 이 수익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31조(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① 위탁자는 이 신탁의 사무처리에 사용할 인감 또는

2020. 7.2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약관-144호

서명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자는 신고된 서명 또는 인감이 적힌 문서를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서명 또는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신탁금의 지급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때에는 인감의 도용, 분실 또는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2조(위탁자의 통지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가입자 관련사항

가. 새로운 가입자가 발생한 때

나. 가입자중에서 퇴직자 및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자가 발생한 때

다. 가입자명부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할 필요가 발생한 때

라. 기타 가입자와 관련하여 신탁계약 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2. 위탁자 관련사항

가. 위탁자의 퇴직금 관련규정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위탁자의 합병, 조직변경 등 위탁자의 존속에 관계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다. 기타 위탁자와 관련하여 신탁계약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통지사항에 대해서 위탁자가 통지하는 내용이 사실이 상위하거나 통지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3조(신고의무)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신탁계약서 또는 신고한 인장을 분실하였을 때

2. 위탁자의 주소변경, 인감변경, 성명변경, 명칭 또는 조직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의 변동,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신탁관계인의 변경이 있을 때

제34조(계약부속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계약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 규정 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위탁자, 신탁관리인,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위탁자와 신탁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계약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수탁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다른 위탁자와 계약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다만, 위탁자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수익자가 관계사 전출등 위탁자를 이동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의 분할 및 합병등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간 신탁금 이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공동수탁)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을 2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합니다)와 공동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공동수탁자들 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조항해석 및 변경 등)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상위할 경우 신탁법, 신탁업법,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② 이 신탁의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위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8조(채권평가충당금) 이 신탁에 대해서 채권평가충당금의 적립은 신탁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9조(비밀보장)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1조(관련법령등의 준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신탁업감독 규정 및 수탁자 내규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42조(관할법원) 위탁자,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